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5. 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영역
2. 연구 영역
3. 교수 영역
4. 국제화 영역
5. 경영혁신 영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지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 장 평 가 기 구

제7조(평가관)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

② 평가관은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 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8조(대학발전위원회) ①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둔

다.

② 대학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 기본방향 설정
2. 평가지표 심의
3. 평가기준 심의

제9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지표 개발
2. 평가기준 설정
3. 평가항목별 자체평가

### 제 3 장 평 가 방 법 및 절 차

제10조(평가계획 수립) 기획처는 매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관련 부서는 기획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2조(평가실시) ①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실사) 실무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보고)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자료를 확인한 후 대학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